

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6월 3일
- 회부일자 : 2022년 6월 3일

3. 제안이유

- 2022. 8. 11. 시행 예정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맞게 지역체육회 및 지역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의무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,
- 국민권익위원회의 “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”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·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 신설(안 제7조)
 -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무 및 구체적인 지원 항목 규정

○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규정 정비(안 제10조)

- 협의회 위원인 충청북도체육회장을 당연직 위원 항목에 명시

5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규정에 맞게 지역체육회 및 지역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의무지원 조항을 신설하였고,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7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하여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무 및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10조 제3항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규정 정비로 협의회 위원인 충청북도체육회장을 당연직 위원 항목에 명시 하였으며,
- 그밖에 안 제7조제1항, 제10조제1항 등에서는 미비점을 보완하였음.

○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